

미국과 유럽의 PL관련 판례

글 · 강창경 연구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1. 전동 공구 사건(캘리포니아, 1963년)

원고는 처가 구입한 다목적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나무 조각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 중에 갑자기 나무 조각이 공구로부터 빠져나가 원고의 손님에게 중상을 입혔다. 10개월 반 후 원고는 전동 공구의 소매자 및 제조자에 대하여 보증 위반의 통지를 하고 보증 위반 및 과실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제조자는 보증 위반의 통지를 법이 정한 기간내에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이에 따라 제조자는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생긴 손해의 비용은 해당 제품을 유통 시킨 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시장에 내놓은 제품이 결함의 유무에 대하여 검사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을 제조자가 알고 있으며, 또한 그 제품이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결함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제조자는 업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가 전동공구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을 때 전동 공구의 설계상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하여 부상한 것이 입증되면 제조자는 불법행위법상의 업계 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보증 위반의 통지를 하였는가의 여부는 업계 책임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고 보았으며, 소매상에 대한 청구도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미국에서 최초로 업계 책임리를 적용한 판례로 유명하며 일명 그린맨 사건 (Greenman v. Yuba Products Case, Cal. 1963)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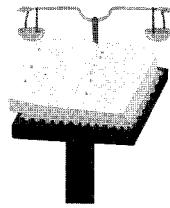
2. 의류 건조기 사건(사우스캐롤라이나, 1983)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중고 의류 건조기를 구입하여 지하실에 설치하였다. 2주일 후 원고가 모포를 건조시키기 위하여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건조기의 과열로 불이나 가옥의 일부가 소실됐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업계 책임에 의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중고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업계 책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중고품의 판매자가 업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 및 학자 사이에 견해가 분분하지만 중고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며, 중고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결함에 대한 업계 책임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3. 러닝머신 사건(뉴욕, 2001)

1977년 4월 피고측 헬스크립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원고는 운동 중 균형을 잃어 앞에 있는 안전용 손



잡이를 잡지 못하고 넘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흉골부분 골절을 입고 두 차례의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원고는 사고당시 몸의 균형을 잃어 안전용 손잡이를 잡으려 했으나 앞의 손잡이 위치가 멀어 잡을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옆의 손잡이를 설치하였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에게 설계상의 결함과 경고상의 결함을 이유로 180,000달러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러닝머신에 대한 안전표준에 의거 앞의 손잡이가 없을 경우에만 옆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 러닝머신은 설계상의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미 여러 해 사용을 한 경험이 있고, 원고의 선택하에 안전한 속도, 급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충분히 본인이 안전을 유지하였다면 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과실로 인정하여 본 소송을 기각하였다.

4. 냉동기 사건(독일, 1960)

냉동기의 검사 기사가 검사 중에 분출한 암모니아로 인하여 실명하였다. 최고재판소는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보면, 이런 종류의 사고는 예견이 가능하며 따라서 그 회피도 가능하다고 하여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였다.

5. TV 케이스 사건(영국, 1977)

화물 자동차 운전사가 목재 상자위에 화물을 쌓던 중에 상자가 파괴되어 지상에 떨어졌다. 운전사는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으며, 제조사에게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제조사의 과실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상자에 못이 부적절하게 박혀 있던 사실에서 원고의 부상 원인이 제조사의 종업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제조사에게 8,298파운드를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

< 외국의 리콜 사례 >

1. 가습기 사건

CPSC와 공동으로 매사추세츠주 사우스보로의 Duracraft사는 1997년에 백만개의 가습기를 리콜하였다. 이 가습기는 과열될 우려가 있고, 이로써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한다(해외소비자정보 '97. 10).

2. AC 어댑터 사건

CPSC와 공동으로 매사추세츠주 메이너드의 Digital Equipment사는 자발적으로 HiNote VP500 시리즈 노트북 컴퓨터에 사용되는 AC 어댑터를 리콜 중이다. 미국에서 약 20,000개의 제품이 판매되었는바, 커넥터의 핀이 어댑터에서 부러질 수 있으며 부러진 핀이 전원코드 안에 남아 있게 되면 쇼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해외소비자정보 '97. 10).

3. 동력 사슬톱 사건

STIHL사는 CPSC와 공동으로 휴대용 동력 사슬톱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였다. 이 제품의 결함은 사용중 가스 뚜껑이 느슨해 지면서 연료가 새어나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NACAA NEWS '97. 2).

4. 체인톱 사건

Husqvarna Forest & Garden사는 미국 CPSC와 공동으로 22만 7천개에 이르는 체인톱을 리콜하였다. 이 톱은 사용된 변류기를 적정하게 교체하지 않을 경우 톱날로부터 발생된 열이 톱전면의 손 보호대를 녹여 베릴 수 있다고 한다(NACAA NEWS '97. 4).